



세계로 준비하는 4대미항 여수

등록번호	지역경제과	주무관	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부시장	시장
보존기간	5년	김성희	이상현	김영호	김승민	이태성	김영환
결재일자	2013. 8. 21.	협조 법무팀장 김홍서, 기획예산과장 이병우					
공개구분	공개						

『여수시 유통업 경쟁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안)

oh! YEOSU 2020

 여 수 시
[지역경제과]

유통산업발전법관련 여수시조례 개정 계획(안)

□ **조례명** :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개정이유**

- '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SSM에 대하여 최초로 영업규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시는 '12년 3월 본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시작
- 이에 이마트 등 대규모점포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전국적으로 사실상 영업규제가 무력화 되자 우리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는 '소 제기' 사유를 치유한 조례 개정 후 2차 영업규제
- 이후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와 특히,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에 의하여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13. 1. 23. 개정
- 일부의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3. 7. 24.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수년
이상

(12년 8월)

□ **주요내용**

- 법률에 근거 없이 설치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신설된 법률 조항에 맞추어 구성·운영하도록 정비(제8·9조)
 - (기존) 15인 이내 위원 구성 → (근거 기준) 9인 이내 위원 구성*
 - * '13.7.1. 재구성 운영 중 - 시의원·상공회의소·소비자단체 등 일부 제외
 - 영업규제 시행·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실질적 기능을 부여
-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 시 요건 강화(제15조)
 -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첨부 의무화 - 미진할 경우 보완 요청 가능

○ 사전 입점예고제 도입(제15조의2)

- 대규모점포 등 개설예정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개설시기 등 예고

○ 영업규제 확대 및 강화(제15조의3)

- 영업시간 제한 확대 : (현행) 0시 ~ 08시 → (개정) 0시 ~ 10시

- 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 매월 1~2일 → (개정) 매월 이틀 공휴일

※ 단,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 영업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상향

: (현행) 51% 이상 → (개정) 55% 이상

□ 개정 조례(안) - 별첨 참조

□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 별첨 참조

□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 향후 추진일정

○ '13. 8월 : 조례 제정 방침결정

○ '13. 8월 :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2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 '13. 9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요구

○ '13. 9월 : 조례안 확정 및 시의회 부의요구

○ '13. 9월 : 시의회 심의·의결

○ '13. 9월 이후 : 조례 공포·시행(예정)

□ 기타 참고자료 - 별첨 참조

○ 타 지역 조례 개정 현황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유통업무 담당 과장
2.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4.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5.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심의 및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수시 소재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제15조 제3항에 관하여 시장이 중재를 요청하는 사항

11. 제15조의3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중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여수시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개설계획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개설계획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중전 제15조의2)제1항 중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1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오전 8시까지”를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 이내로 한다.”를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매월 2회 이상”을 “매월 3회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u></p> <p><u>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의 구성)</u></p> <p><u>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유통업무 담당 과장</u> <u>2.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u> <u>3.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u> <u>4.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u> <u>5.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u>6.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u>

현 행	개 정 안
<p>③ <u>협의회</u>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여수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3.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4. 소비자단체 대표 5. 여수상공회의소 관계자 6.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7.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③ <u>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	개정안
<p>⑤ <u>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하며,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⑥ <u>협의회 회의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은 협의회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u></p> <p>⑦ <u>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⑧ <u>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u></p>	<p><삭 제></p>
<p>제9조(협의회 기능) <u>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 및 중재할 수 있다.</u></p>	<p>제9조(협의회 운영 등) ① <u>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② <u>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u></p> <p>③ <u>회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현행	개정안
<p>1. <u>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p> <p>2. <u>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u></p> <p>3. <u>대형유통기업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u></p> <p>4. <u>여수시 소재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u></p> <p>5. <u>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u></p> <p>6. <u>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u></p> <p>7. <u>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u></p>	<p>④ <u>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u></p> <p>⑤ <u>협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심의 및 중재할 수 있다.</u></p> <p>1. ~ 9.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8. <u>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u></p> <p>9. <u>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u></p> <p>10. <u>제15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u></p> <p>11. <u>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10. <u>제15조 제3항에 관하여 시장이 중재를 요청하는 사항</u></p> <p>11. <u>제15조의3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u></p> <p>12. <u>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u></p>
<p><u>제15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p><u>제1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현 행	개 정 안
<p>1. 「<u>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u>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p> <p>2. <u>상생협력 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u></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p>

현행	개정안
<p>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u>51퍼센트</u>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p> <p>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u>오전 8시까지</u>의 범위 이내로 한다.</p> <p>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u>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u> 이내로 한다. 다만, <u>매월 2회 이상</u> 공휴일 등에 휴무하는 점포(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함)와 읍·면 및 도서지역의 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p> <p>② (생략)</p>	<p>----- ----- ----- ----- ----- 55퍼센트 ----- -----.</p> <p>1. ----- ----- ----- <u>오전 10시까지</u>의 -----.</p> <p>2. ----- ----- ----- <u>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u> 다만, <u>매월 3회 이상</u>----- -----.</p> <p>② (현행과 같음)</p>